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원화고정납입특약

2. 보험의 적용

외국통화(이하 “외화”라 한다)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서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한다)로 매 납입 해당월에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보험기간	주계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계약의 납입기간

4.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의 납입주기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로 한다.

나.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원화고정보험료”라 한다.

다. 원화고정보험료는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다. 매회 납입하는 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한다.

7.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한다.

나.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8.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에 관한 사항

가.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

(1)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원화 환산 및 외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화고정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일 영업일(이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라 한다)로 한다.

(2)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한다)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한다.

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환산율을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이라 한다.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주계약의 적립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

가.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지비와 수금비 제외)을 보전한다.

나.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정사업비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 해당월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고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 특약의 적립금이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한다.

- (1)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 (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11.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가.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

- (1) 납입유예기간은 “10.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도래하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한다.
- (2) 계약자는 1회에 한하여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 연장은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전 또는 회사의 납입유예기간 종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효력

- (1)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유지비(주계약에 납입후 유지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납입후 유지비)를 공제하여 대체한다.
- (2) 납입유예기간 중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에서 주계약의 위험보험료와 주계약의 유지비를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다.
- (3) “(2)”에 의하여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경우, 회사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 (4) 납입유예기간 및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납입기일을 통지한다.
- (2)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2개월 이상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 납입유예를 중지하고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라. 주계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한다.
- (2)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한다.
- (3) “(1)” 또는 “(2)”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또는 연금개시나이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업방법서 이내에서 변경한다.
- (4)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주계약 해약환급금 계산시 경과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납입경과기간월수에는 납입유예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2)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한다.

1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 가.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이란 “10.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에 상당하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새로운 원화고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새롭게 고정(固定)한 금액을 “신(新)원화고정보험료”라 한다.

나. “가”에 따라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부터 매회 납입하는 “신(新)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한다.

1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에 의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인출할 수 없다.

14. 기 타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